

농약 판매상에 바란다!

- 품질 향상
- 유통 원활
- 적정 사용

당면과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 필요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생물검사과장
조남길

오늘날 농약이 농산물 증산에 필 요불가결한 영농자재임은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며, 농약의 원활한 공급에 이바지하여 오신 농약 판매상 여러분들의 역할은 생산자, 소비자 못지 않게 또한 큰 것입니다. 병해충과 잡초 방제를 위해 농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농약공해에 대한 반론의 소리도 드높아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생산자, 판매자, 사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규제와 지도가 명행되어야 함도 또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농민의 농약에 대한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상작물에 대한 약효가 없다', '약해가 발생되었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만, 이를 확인하여 보면 거의가 잘 못 사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민

원들을 줄여볼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지면을 통해서나마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고 있는 판매상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고 지켜야 할 일들을 당부드리고자 함이 이 글을 쓰는 근본의도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꼭 알아두고 지켜야 할 일

먼저 농약을 공급받아 최종 소비자인 농민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꼭 준수하여야 할 사항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판매 말아야

농약은 반드시 정부 당국이 고시한 품목만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농약명, 품목명,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병해충, 약효보증기



◇ 적발된 무고시·무등록 농약들 —
마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처럼 외국문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포장이 제조회사에서 판매하는 농약과 다르다.

간, 사용방법, 사용시기 등 농약관리법에 규정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부정농약이므로 절대로 구입·판매해서는 안되겠으나 아직까지도 무고시, 무등록 농약이 적발된 사례(표1)가 있으니, 이러한 부정농약은 받아놓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나.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은 반품·폐기토록

농약은 정밀화학제품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약효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농약에 약효보증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판매한다는 것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약효가 없는 농약을 판매하는 것이

되므로 당연히 팔아서는 안되는데도 판매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음을 유감이 아닐 수 없읍니다. 농약을 판매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모든 농약의 약효보증기간은 대부분이 성수기가 지난 후인 10월 말까지이므로 11월 이후에 재고 농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신다면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은 제조회사가 수거하여 다시 제조하거나 폐기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판매자로서는 이러한 재고농약이 발견되면 시·군의 농약검사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에 봉인조치를 받아 반품 또는 폐기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채삼 강

<표 1> 무고시(무등록)농약 판매사례

총 농 약 명	규 격	포 장	단 위	판 매단가	제 조 원	총 화 학 분 자		총 화 학 분 자		총 화 학 분 자		총 화 학 분 자	
						제 조 원	제 조 원	제 조 원	제 조 원	제 조 원	제 조 원		
비에트란트리아민	분입수화제	P E T 병	450g	450g	한국화학제약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고농축액화티엘인산칼슘	분수유화소	P E 박스	200g	500g	한국화학제약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ROO TONE F	분수유화액	P E T 병	500g	500g	한국화학제약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BERRY - SET	분수유화액	P E T 병	300ml~500ml	300ml~500ml	한국원예자재센터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Blossom Transplantone	나사	M	"	"	한국원예자재센터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그리C	수액	"	"	"	한국원예자재센터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Sevin	카텐루프라토트제	P E	10LBS	10,000	한국원예자재센터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메세나타도파토나	수화제	P E	5g	200	한국원예자재센터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Captan	분수용제	P E	(20g×3포)	3 g×12	한국원예자재센터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가루스나이트A	분수화제	P E	60g	2,000	한국원예자재센터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마루루투구스Hi	분수화제	P E	500g	"	한국원예자재센터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갓도파스티Bayleton	분수화제	P E	250g	"	한국원예자재센터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日曹모스론	분수화제	P E	100g	"	한국원예자재센터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NAA + NAA-트립신	분수화제	P E	10g	"	한국원예자재센터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Topsin	분수화제	P E	135g	"	한국원예자재센터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200g	"	한국원예자재센터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30ml	"	한국원예자재센터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50g	"	한국원예자재센터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50정	"	한국원예자재센터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250g	"	한국원예자재센터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 신축제언/농약 판매상에 바란다 ◆

조드립니다.

**다. 포장지 식별이 곤란한
농약이나 표기내용을
변조·판매 않도록**

제조공장으로부터 운송도중 훼손
되거나 판매소에서 보관 또는 취급
부주의로 약액의 누출, 라벨의 훼손
또는 탈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와 함께 이러한 농약은 공급자로부터
농약을 인수는 물론 판매하는 일
도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표시
된 라벨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 등의 이유로 변조 또는 별도 판
매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라. 개포장·분포장 판매 및
자체검사필증이 없는
농약의 판매금지**

농약은 출하 전에 자체검사를 실
시하고 반드시 「자체검사필증」을 부
착하여 출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
다. 왜냐하면 자체검사필증이 붙어
있지 않은 농약은 품질불량일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약은 공급
받지 않도록 하고 또한 취급하지 말
기 바라며, 특히 농약의 용기나 포
장을 개봉하여 여러 개로 나누어 판
매하는 것은 부정품의 거래 또는 품
질의 저하를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판매는 하지 말기를 부탁
드립니다.

마. 맹독성 농약의

취급·판매 제한

농약은 독성정도에 따라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으로 구분(표 2)하
고, 이 독성구분에 따라 공급대상,
수송, 보관, 판매 및 사용방법을 제
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성이 강한 맹독성 농약은
시판상에서의 취급이 금지되어 있으
니 절대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격려와 함께 몇가지 부탁

다음으로 농약을 판매하는 여러분
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
리며 덧붙여서 몇가지 더 부탁말씀
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 농약의 보관 및
변질예방 철저**

농약은 보관시 의약품, 식료품 및
사료 등의 보관장소와 구획·구분하
여 보관해야 함은 물론이고 창고의
바닥은 콘크리트로 깔판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매진열대에
차광시설이 없어 햇볕 등에 일정기
간 경과하면 화학물질의 변화 등으
로 약효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주의
해야 하겠습니다.

**나. 농약가격 표시제의 이행과
농약 판매대장 기입**

당해년도 생산농약은 회망소비자

〈표 2〉 농약의 독성구분과 취급제한기준

독성구분	증 악 명	증 악 명	영상 표)	최 급 세 헌 기 증
이모이나방약 술인죽과리약 (2개 품목)	파라치온유제 테미입제	파라치온유제 테미입제	① 풍습방지: 조달청, 전매청, 산림청, 농협에 허가. 다만, 테 미입제는 신림청에 허가. ② 수송: 의약품, 인체물질과 혼처 수송금지. ③ 보관: 천공기, 설거하고 “매독성 농약”임을 표시. 고독성 농약 보통도상 농약과 별도 보관하고 시전장지. ④ 판매: 별도 전별장(“매독성 농약”이라 표시)을 설치하 여 진열판에	① 풍습방지: 조달청, 전매청, 산림청, 농협에 허가. 다만, 테 미입제는 신림청에 허가. ② 수송: 의약품, 인체물질과 혼처 수송금지. ③ 보관: 천공기, 설거하고 “매독성 농약”임을 표시. 고독성 농약 보통도상 농약과 별도 보관하고 시전장지. ④ 판매: 별도 전별장(“매독성 농약”이라 표시)을 설치하 여 진열판에
망독성농약 (2개 품목)	이모이나방약 술인죽과리약	이모이나방약 술인죽과리약	⑤ 사용: 파라치온유제는 과수 이외의 모든 농작물에 사용 금지, 테미입제는 소나무 이외의 잎목 및 농작물에 사용 금지 하며 신림청장이 지정하는 취급관리책임자에 한함.	⑤ 사용: 파라치온유제는 과수 이외의 모든 농작물에 사용 금지, 테미입제는 소나무 이외의 잎목 및 농작물에 사용 금지 하며 신림청장이 지정하는 취급관리책임자에 한함.
전 덧 물 약	에키류스유제, 포스트수화제(이미단), 디비로이피유제, 이파 엔유제, 이진포수화제(구사치온), 이조포유제(호스토치온) 포스팜액체(다이腼크론), 모노포액체(이조드린·뉴비크론), 메티유제, 메티시스토ックス, 바미(액체)침판, 헬페노우유제, 흐 스터킹), 에소털액액제(에리트), 살비란피유제, 벨스유제(온풀) 파리디파유제(파리단) 페카법유제(묘폭스), 메치온유제(수프트리사이드) 가보차수화제(트리치온, 알리포유제(토락)	액지 벌레 약 용 (322) 품목	① 수수: 맹독성 농약과 동일 ② 보관: 농약 청입장을 표시하고 시전장지	① 수수: 맹독성 농약과 동일 ② 보관: 농약 청입장을 표시하고 시전장지
고독성농약 (322) 품목	금나방 약 배추흰나방 약 단미나방 약 도양소독 약 제곡해충 약 맹독성 농약을 제외한 농약의 전품목	금나방 약 배추흰나방 약 단미나방 약 도양소독 약 제곡해충 약 맹독성 농약을 제외한 농약의 전품목	③ 수용: 수도용, 사용금지 ④ 기타(이회ぬ청체 및 메칠보로미어드 훈증체) • 풍습방지: 조달청, 전매청, 농산물검사소, 식물검역소, 농 수산물검사소, 허가. 다만, 수용업자에 한함. • 사용용: 풍습방지 및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자 및 수용업자에 한함. 다만, 실수요자가 사용할 경우 에는 농신물검사소, 식물검역소, 제조업자 및 수용업자 책임자도 하여야 사용	③ 수용: 수도용, 사용금지 ④ 기타(이회ぬ청체 및 메칠보로미어드 훈증체) • 풍습방지: 조달청, 전매청, 농산물검사소, 식물검역소, 농 수산물검사소, 허가. 다만, 수용업자에 한함. • 사용용: 풍습방지 및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자 및 수용업자에 한함. 다만, 실수요자가 사용할 경우 에는 농신물검사소, 식물검역소, 제조업자 및 수용업자 책임자도 하여야 사용
보통도상농약 (3622) 품목	이회ぬ청체(에피풀), 에칠폴로미어드 훈증체	이회ぬ청체(에피풀), 에칠폴로미어드 훈증체	① 수송: 맹독성 농약과 동일 ② 보관: 농약 청입장을 표시하고 시전장지	① 수송: 맹독성 농약과 동일 ② 보관: 농약 청입장을 표시하고 시전장지

* 농약의 품목을 수는 1987년 12월 31일 현재 7종입니다.

가격(권장소매가격)이 인쇄·판매되고 있으나 이월 재고 농약등은 전년도 가격이므로 스티커 등을 부착·판매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잘 이해되지 않고 있음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한 판매자가 품목별·구입처별 구입량, 판매량, 재고량 등을 철저히 기입함은 판매상 자신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재고 파악 등에 도움이 될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으니 농약관리대장을 기재하여 보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불량농약의 봉인 및 수거 협조

시·도(시군)단속공무원 또는 국립농업자재검사소의 직권검사에 의해 기준미달인 불합격 농약의 모집단이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 각 시·도(시군)을 통하여 판매상 여러분들에게 통보(1987년 16건)하여 완전 수거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자기 창고 또는 판매 구역 내에 이러한 동일 모집단이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혹시 발견되면 시·군 단속공무원에게 연락, 봉인조치하여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 무조건 농민이 원하는 농약, 이익이 높은 품목만의 판매 지양

병해충이나 잡초에 알맞은 농약을, 제때에 알맞은 희석배수로, 정해진 양을 사용하여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농약인데 이러한 과제를 분담하여 주셔야 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농약의 약효나 약해 등에 개의치 않고 농민이 달라는 농약만을 무조건 판매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익이 높은 품목만을 판매하는 분은 없을 줄로 믿읍니다만, 농약을 사러 온 농민에게 병해충에 적합한 농약을 판매하되 사용량, 사용시기,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농약의 허위·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어 정확한 정보 및 지식없이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지도기관의 자문과 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자기발전을 위한 지식탐구에도 힘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불량농약 적발에 적극 협조를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농약을 판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계법규나 행정지도사항을 잘 지켜주신다면 농약

〈표 3〉 부정·불량농약 단속현황

위 반 사 항	'84		'85		'86		'87	
	업소수	건수	업소수	건수	업소수	건수	업소수	건수
무고시 무등록 농약판매	10	18	55	63	14	14	6	6
취급 제한 농약 판매	2	4	5	5	1	1	1	1
농약 분포장 판매	—	—			1	1		
관리인 미상주	10	16			6	6	2	2
포장지 훼손	12	20	24	32	2	3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판매	29	59	30	54	11	14	12	44
약효보증기간 변조 및 삭제	5	10						
판매업 시설 기준 위반	2	4						
개포장 및 분포장 농약판매	1	1	4	4				
판매대장 미기재	2	3						
허위 표시 농약 판매			1	1				
가격 표시 미개시			5	13				
계	73	135	124	172	35	39	21	53

점검 공무원의 단속이나 점검의 필요성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지난한 해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서 지적한 조치(표 3)만 해도 적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농약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이 있는 듯하여 농약판매상 여러분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것은 불량농약 적발에 대한 협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 부터 농약을 공급받을 때, 또는 판매한 농약의 사용자로부터 약효, 약해 등의

여론이 있을 때 등 농약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시·군의 농약점검 공무원에게 알려 시료를 발취하여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 검사 의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의 원활 및 그의 적정한 사용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이며, 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농약을 판매하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리는 요망사항 또한 많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기 바라며, 농약 판매상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